

「정기적금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「정기적금」
- **상품특징** :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
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4.03.18. 기준)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
가입대상	• 제한없음														
가입방법	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SB톡톡+, i-Bank)														
해지방법	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SB톡톡+, i-Bank)														
가입금액	• 10,000원 이상														
가입기간	• 6개월 ~ 36개월 (월단위)		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일시 지급식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		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													
제한 사항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												
이자 율	기본	•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<table><thead><tr><th>계약기간</th><th>고시금리</th><th>비고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</td><td>2.50%</td><td rowspan="3">세전</td></tr><tr><td>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</td><td>4.00%</td></tr><tr><td>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</td><td>4.00%</td></tr><tr><td>36개월 이상</td><td>3.20%</td><td></td></tr></tbody></table>	계약기간	고시금리	비고	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2.50%	세전	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4.00%	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	4.00%	36개월 이상	3.20%	
	계약기간	고시금리	비고												
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2.50%	세전													
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4.00%														
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	4.00%														
36개월 이상	3.20%														
우대	• 적용조건 : 비대면 정기적금 가입 시 0.1%p 우대금리 적용(단, 가입기간 12개월 이상)														
만기 후	•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<table><thead><tr><th>경과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개월 이내</td><td>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 이율 적용</td></tr><tr><td>1개월 초과</td><td>보통예금 이율 적용</td></tr></tbody></table>		경과기간	이 율	1개월 이내	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 이율 적용	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 적용			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			
1개월 이내	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 이율 적용														
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 적용	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-----	-----

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원미만 절사)
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일수(입금일~만기일 전일)/365

만기이자 산출근거

수익률

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

만기의 자동해지

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
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
 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× 50%]

예치기간	이 율	비 고
1개월 미만	연 0.4%	보통예금 이율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2%	
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
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60%	
24개월 이상	약정이율 × 70%	

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

• 계산방법<예시>

※ 가입기간이 "1개월 미만"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**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**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임.

위법계약 해지권

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**일정 기간**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**계약 해지**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**10일 이내**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**거절사유와 함께 통지**하여야 합니다.
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
구 분	내 용
계약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점 창구에서 해지 가능, 인터넷뱅킹 해지 가능, 모바일뱅킹 해지 가능 (인터넷/모바일 가입상품 창구 해지 시 수수료 발생합니다.) •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,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. ※ 이연일수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 / 계약회차 ※ 지연이자 = 월부금 × (총지연일수 - 선납일수) / 365 × 지연이자율(=약정이율+연2%)
만기 앞당김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※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※ 만기앞당김 이자 = 만기지급액 × 앞당김이율(=약정이율+연2.0%) × 앞당김일수 / 365
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/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 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.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가(단, 계약의 분할은 가능)
자동재예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 •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
연계·제휴 서비스	해당사항 없음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**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*금리변동형 정기에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**로 **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

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,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**중도해지**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**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**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

예 / 아니오 ☞ "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"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

②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**합니다.

20 고객명 : (서명/인)

◎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